

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. 10. 22 선고 2024가단466 판결 [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9. 3.

판결 선고2024. 10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상주시 C아파트 D호 철근콘크리트조 전유부분 44.94㎡를 인도하고,
나. 2023. 12. 10.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00,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고는 임차인인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함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배예선